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24
----------	------

2024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서준오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서준오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곳곳에서 산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이 존재 하지만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은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의 등산로를 훼손하고 있음
- 이는 일반 등산객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숲길의 정의(안 제2조제7호)
- 2) 숲길 지정관리(안 제11조)
- 3) 숲길 실태조사(안 제12조)
- 4)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6일 제정(시행) 되었으며, 제정 배경은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 사업¹⁾, 정원도시 및 산림치유 사업²⁾, 그 밖에 사업 등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등산로에 진입하여 등산객의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계단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세부적으로 안 제2조제7호는 ‘숲길’을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³⁾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하지만, 본 조례안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을 같이 지칭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조성한 길’의 문구는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상위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기간(2019~2024.7.), 시범운영('24.8.~12.), 공식 개장('25.1.예정)

2) 불암산 힐링타운(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 42-3 등): 산림치유센터, 유아숲체험장, 철쭉동산, 서울둘레길 등

3)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⁴⁾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서울시도 이를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일부개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 ‘숲길’의 정의를 상위법을 준용하여 수정하고,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4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숲길’의 정의를 상위법을 준용하여 수정하고,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숲길” 정의 수정(안 제2조제7호)
-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을
“영 제11조의7”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숲길</u>”이란 산림에 <u>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u>숲길</u>”이란 <u>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p>	<p>제3조(책무) <u>시장</u>----- -----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p>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u>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u></p>

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5항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 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영 제11조

<신 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② -----

----- 영 제11조의7-----

<신 설>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제3조(책무) ----- ----- 법 ----- ----- ----- ----- ----- -----.</p> <p><u>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u></p>

<신 설>

<신 설>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